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홍 지 광 의원)

의 안 번 호	25-78
------------	-------

발의년월일 : 2025. 8. .

발 의 자 : 홍지광, 강동오, 백남환,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이상원, 최은하, 한선미

## 1. 제정이유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공익소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라.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간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바. 비밀유지의무 및 환수조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4조)

###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 4. 조 례 안 : 붙임

###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5. 8. 7. ~ 8. 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소송”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공익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소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2. “공익소송비용”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지원 대

상으로 한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시기)** ① 공익소송비용은 소송이 종국적으로 종료된 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의 각 심급 판결(심급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선고된 이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 당사자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자는 판결 선고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다수인 경우 대표자 1명이나 소송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은 소송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종결 시 판결(승소, 패소, 화해·조정, 각하 등) 이유
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또는 자치구 공익소송 중복지원 여부

4.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

②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확정된 이후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지원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장 부분, 법원 판결(결정)문,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등 소송 및 소송비용 입증서류

7.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③ 공익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법원이나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공익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익소송 관련 소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과 법무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3.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행정·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

원회 소관 팀장이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b>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b>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자택)		(사무실)		
소송정보	<소송 종류> 민사소송( ) 행정소송( )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		소송	
			고		대리인	
			피		소송	
	고		대리인			
기타사항						
사 건 내 용						
신청금액	총 계	변호사 보수	그 밖의 비용	기타		
	원	원	원	원		
수령방식	<input type="checkbox"/>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input type="checkbox"/> 본인 계좌 (택 1)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본인 계좌를 선택할 경우) 소송비용 지출증빙을 위해 별도로 대리인 계좌                      입금내역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div>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b>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b>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필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선택) 전화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익소송비용 지원 관련 개인정보 조회·확인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소송비용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익소송비용 지원 관련 개인정보 조회·확인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소송비용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익소송에 대한 지원 시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제3항

(공익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새마포담당관 이 준 영
연 락 처	02-3153-8523